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5821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582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51400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피고, 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천혜진, 김서원

변론 종결2024. 11. 8.

판결 선고2024. 12. 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51400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175,095,605원 및 그중 169,859,170원에 대하여 2022. 6. 3.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947,615원 및 그중 169,859,170원에 대하여 2022.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상실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위 21회 내지 36회 대출이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임을 다투지 아니한다."를, 제5면 제1행 위에 "타. 2017. 12. 말 현재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는 1,075,000,000원, 자본총계는 559,000,000원, 연 매출액 1,233,000,000원이다."를 각각 추가하고, 제4면 제19행의 "보증채무원리금은 178,947,615원이고, 그 중 원금은 169,859,170원이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금'이라 한다)."를 "보증채무 원금은 그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지 않은 21회 내지 36회 대출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169,859,170원이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금'이라 한다)."로, 제5면 제1행의 "13호증"을 "14호증"으로 각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앞서 본 보증채무 원금 169,859,17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용보증서 송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된 대출은 1회 내지 3회 대출인데, 이들 대출 모두가 소외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대출이 아니어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편입된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1회 내지 36회 대출의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

- 1) 1회 내지 3회 대출 또는 적어도 2회와 3회 대출은 소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로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므로,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 이 사건 특약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
- 2) 설령 1회 내지 3회 대출이 모두 소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구비서류 내용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1회 내지 3회 대출 또는 적어도 2회와 3회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특약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기업구매자금대출에서 '정상적 영업활동'의 의미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은 통상적으로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재무활동이나 새로운 수익처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활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고가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계장비 등의 구입비용, 또는 사업장(공장) 및 기존 운전장비의 사소한 유지·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위한 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고가의 영업용 고정자산 등(예컨대 건물이나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 기업자산의 규모에 비추어 대규모 또는 고가의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구매자금과 사업목적에 무관하거나 이와 동떨어진 재화 등의 구매자금 등은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6618 판결 참조).

2) 선관주의의무의 이행과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신용보증약관의 적용

가)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위 대출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급절차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과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상 대출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은행이 위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여 결국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한다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관련서류에 의해 대상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로서 그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한 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43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취지 및 신용보증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신용보증약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대출 실행을 신용보증관계 성립의 조건으로 정한 경우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대출 실행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용보증약관에서 신용보증관계 성립의 조건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실행되었다면, 비록 그 기간 내에 실행된 대출이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관계 성립의 조건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주장하여 신용보증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선관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보증책임을 묻는 대출 금융기관이 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6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1회 내지 3회 대출 중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이 있는지 여부가 앞서 든 증거와 갑 7, 8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회 내지 3회 대출 모두 소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거래 세부내역이 2회 대출은 거래품목 '에어컨, 소방', 1, 3회 대출은 거래품목 '인테리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제조·도매업이고, 종목은 레이스·자수·섬유·무역이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레이스·섬유 무역, 레이스·섬유 제조, 도매,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자동화설비 제조 및 도·소매업,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인바, 이와 같은 소외 회사의 사업 종류, 목적 등을 고려하면 1회 내지 3회 대출은 소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대출로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1회 내지 3회 대출 모두 D를 판매업체로 하여 실행되었고, 소외 회사는 1회 대출을 실행한 2018. 5. 25. 시흥시 E지식산업센터 제5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1회 내지 3회 대출을 위하여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인테리어'(1회, 3회), '에어컨, 소방'(2회)이고, D의 사업자등록에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 종목은 디자인제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회 내지 3회 대출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취득 과정에서 사업장의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청구·실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신규취득한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

조달을 위한 1회 내지 3회 대출을 소외 회사의 일반 기계장비 등의 구입비용 또는 사업장의 사소한 유지·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회와 3회 대출이 경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1회 대출이 경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사업장을 신규 취득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사업장의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소외 회사의 사업의 종류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소외 회사의 4회 대출 실행일인 2019. 5. 22.부터 마지막 36회 대출 실행일인 2021. 7. 6.까지 2년여 간의 대출 내역에서 거래품목이 '에어컨, 소방' 및 '인테리어'인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와 같이 1회 내지 3회 대출은 소외 회사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른 면책의 범위는 대출원리금 전부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1회 내지 3회 대출 실행 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9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회 내지 3회 대출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신청한 대출이 경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인지에 관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대출 금융기관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1회 대출금액이 131,240,000원에 이르고, 1회 대출 실행 후 약 12일 만에 22,840,000원의 2회 대출이, 다시 그로부터 약 6일 만에 27,727,272원의 3회 대출이 각각 신청되었고, 위 3건의 대출 전자세금계산서 상 판매기업이 모두 D로, 거래품목이 '인테리어' 또는 '에어컨, 소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평균적인 금융기관 대출업무 담당자라면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만으로도 1회

내지 3회 대출이 일련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또는 그에 소요되는 자재 대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① 인테리어 공사대금 또는 그에 소요되는 자재 대금은 소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사업장의 사소한 유지·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② 1회 내지 3회 대출을 소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위 대출이 신규취득한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였다는 점인데, 원고가 1회 내지 3회 대출 실행 당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는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에 의하여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은 시설자금 취급 시에 관계증빙서류 외에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금 취급 시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고의 여신업무기준은 B2B구매자금 대출약정 체결 이후 개별 대출을 위하여 MP로부터 매매계약의 내용 및 결제조건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받도록 하고 있을 뿐 MP나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 신규취득한 사업장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장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를 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가 구매관련서류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3회 대출 이후인 2018. 6. 29.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1회 내지 3회 대출 실행 전에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제출받았더라도 그에 의하여 1회 내지 3회 대출이 신규취득한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 지급을 위한 것임을 의심할 수도 없었던 점, ⑤ 대출금융기관이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는데도 사후적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구매자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출 실행 당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다면, 기업구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위 제도의 활용에 기반한 원활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신청한 대출이 경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인지에 관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1회 내지 3회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비록 1회 내지 3회 대출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즉 경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고 사후적으로 판명되었더라도 피고는 신용보증관계 성립의 조건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특약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주장하여 신용보증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75,095,605원(= 이 사건 보증채무금 원금 169,859,170원 + 원고의 계산 기준일인 2022. 6. 2.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 중 미변제금 5,236,435원) 및 그중 이 사건 보증채무금 원금 169,859,170원에 대하여 위 미수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체이자율로 3%를 가산하고 복리로 계산한 9,088,445원을 미수이자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범위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으로, 연체이자율로 3%를 가산하고 복리로 계산하여 미수이자를 산정한 부분은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6. 2. 기준 구체적인 미수이자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중민

판사김소영

판사장창국

별지